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2월 10일 (수)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806호(제이시스메디칼 트레이닝 룸)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합병결의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통지서,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통지서,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상기 준비물 미지참시 주주총회장에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7.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 (제1호 의안 관련)

제1호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통지를 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이 가결된 경우, 매수 청구하고자 하는 주식

의 종류 및 수를 정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별첨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코로나19관련 사항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소독 등 개인위생관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총회장 입장 전 '체온계' 등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특히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현장 참석보다는 위임장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이 거부 될 경우 현장에서 주주확인 후 비치된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시간 및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9. 기타사항

- 당사는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합병의 개요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문

2021년 01월 26일

주식회사 제이시스메디칼
대표이사 강 동 환 (직인생략)

[별첨 1] 합병의 개요

1. 합병의 목적

유안타제3호기업인수목적(주)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정관상 사업목적 달성과 동시에, 피합병법인인 (주)제이시스메디칼은 2004년 8월 설립 이래 미용의료기기 제조기업으로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SPAC합병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이후 SPAC 합병을 통한 기업 상장을 통하여 재무적 안정성 제고, 대외신인도 강화, 기업경쟁력 강화, 자금조달능력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합병의 방법

유안타제3호기업인수목적(주)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사업부는 (주)제이시스메디칼에서 영위하는 사업부입니다. 이에따라 형식적으로 유안타제3호기업인수목적(주)는 존속하고 (주)제이시스메디칼은 소멸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제이시스메디칼이 유안타제3호기업인수목적(주)를 흡수합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3. 합병의 요령

(1) 피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에 관한 사항

피합병회사인 (주)제이시스메디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주)제이시스메디칼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합병회사 유안타제3호기업인수목적(주)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10.9085000주를 교부합니다.

(주)제이시스메디칼이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제이시스메디칼의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주)제이시스메디칼의 자기주식이 되며 (주)제이시스메디칼의 자기주식에도 유안타제3호기업인수목적(주)와 합병시 발행되는 합병신주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당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 교부금의 지급

합병회사인 유안타제3호기업인수목적(주)는 피합병회사인 (주)제이시스메디칼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인 유안타제3호기업인수목적(주)가 피합병회사인 (주)제이시스메디칼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및 단주매각대금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존속회사인 유안타제3호기업인수목적(주)와 (주)제이시스메디칼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4) 합병비율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0년 9월 21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0년 9월 21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0년 9월 20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증가, 최근 1주일간의거래량 가중산술평균증가, 최근일의 증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100분의 10)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 건 합병에서는 3.101%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산출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주당 액면가액 100원)과 21,817원(주당액면가액 5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10.9085000로 평가되었습니다.

(5)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66,399,472주

(6)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21년 02월 11일부터 2021년 03월 15일까지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조건

- 제12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

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의 주식 합계가 그 일방 당사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33을 초과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8)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사항

- 주식매수예정가격: 21,817원

- 반대회사통지와 매수청구의 세부 내용은 동봉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주요일정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0년 09월 21일
	주주확정기준일		2021년 01월 08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21년 01월 11일
		종료일	2021년 01월 18일
	합병반대회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1년 01월 26일
		종료일	2021년 02월 09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1년 02월 1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1년 02월 10일
		종료일	2021년 03월 02일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2021년 02월 11일
		종료일	2021년 03월 15일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1년 02월 11일
		종료일	2021년 03월 15일
	합병기일		2021년 03월 16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1년 03월 16일
	합병등기에정일자		2021년 03월 18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년 03월 31일

주) 상기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합병의 개요는 2021년 01월 25일자로 전자공시된 합병회사의 합병증권신고서를 요약, 정리 하였습니다. 합병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의 합병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문

1. 주식매수청구권 개요

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2021년 02월 10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하며, 각 사 정관에 의거하여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유안타제3호기업인수목적(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합병 당사회사 중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제이시스메디칼의 경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단, 유안타제3호기업인수목적(주)의 공모 전 발행 보통주 및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공모 전 주주의 발기주식 및 전환사채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 예정가격 등

(1) (주)제이시스메디칼의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1,817원

-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회사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주)제이시스메디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1,817원이며, 이는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으로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3항에 의거 (주)제이시스메디칼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주)제이시스메디칼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1) 행사절차

(가)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1년 01월 08일) 현재 (주)제이시스메디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2021년 02월 10일)전일까지 (주)제이시스메디칼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주)제이시스메디칼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1년 02월 10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주)제이시스메디칼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주)제이시스메디칼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주)제이시스메디칼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장소

-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유안타제3호기업인수목적(주)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6 유안타증권빌딩

(주)제이시스메디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307호(가산동)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첨부양식 1)

이사회결의 반대이사 통지서

본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이사회 결의사항 (유안타제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제이시스메디칼의 합병계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합니다.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보통주 :
반대이사표시 주식수	보통주 :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주식회사 제이시스메디칼 대표이사 귀하

(첨부양식 2)

주식매수청구서

본인은 귀사의 이사회결의사항 (유안타제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제이시스메디칼의 합병계약 체결의 건)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보통주 :
반대이사표시 주식수	보통주 :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주식회사 제이시스메디칼 대표이사 귀하